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행정기획위원회(행정지원과)

의안번호	105 호
제 출 자	성북구청장 (2023. 3. 13.)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전문위원 정 진 만

1. 제안이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안정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북구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변경(안 제2조)

- 지방공무원의 총수 : 1,586명 → 1,592명 (+6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6명 → 42명 (+6명)

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변경(안 제3조 관련 별표 2)

-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비율
 - 7급 → 34.5% 이내 (증 0.5%)
 - 전문경력관 → 0.5% 이내 (감 0.5%)

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변경(안 제4조 관련 별표 3)

- 정원 총계 : 1,586명 → 1,592명 (+6명)
- 일반직 계 : 1,576명 → 1,582명 (+6명)
 - 6급 이하 : 1,496명 → 1,502명 (+6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기준인건비 범위 내

다. 입법예고 : 2023. 2. 16. ~ 2023. 2. 21.

라. 입법예고 결과 : 제출의견 1건

부서	개 정 안	수 정 안	검토의견	반영 여부												
행 정 지 원 과	[별표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table><tr><td>구 분</td><td>...</td><td>전문경력관</td></tr><tr><td>비 율</td><td>...</td><td>(0.5)% <u>이상</u></td></tr></table>	구 분	...	전문경력관	비 율	...	(0.5)% <u>이상</u>	[별표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table><tr><td>구 분</td><td>...</td><td>전문경력관</td></tr><tr><td>비 율</td><td>...</td><td>(0.5)% <u>이내</u></td></tr></table>	구 분	...	전문경력관	비 율	...	(0.5)% <u>이내</u>	우리 구 인력 운영상 전문경력관 정원을 0.5% 이내로 조정하고 필요한 직급의 비율에 재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	반영
구 분	...	전문경력관														
비 율	...	(0.5)% <u>이상</u>														
구 분	...	전문경력관														
비 율	...	(0.5)% <u>이내</u>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와 제24조제1항1)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필요한 인력 확충(일반임기제 7급)²⁾을 위해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 주요내용은

- 안 제2조(정원의 총수)의 지방공무원 총수를 1,586명에서 1,592명으로 6명 증원함(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6명 → 42명)
- 별표 2의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변경
 - 7급 → 34.5% 이내(증 0.5%)
 - 전문경력관 → 0.5% 이내 (감 0.5%)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정책지원관 인력 확충을 위해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